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55호
- 나. 제안자 : 김영한 의원 외 13명
- 다. 제안일자 : 2017년 8월 17일
- 라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도시농업의 정의에 곤충사육(양봉 포함)을 추가하고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등 최근 개정된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농업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농업 지원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도시농업, 도시농업관리사 등 개정된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규정을 정비함(안 제2조)
- 도시농업위원회의 전문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설치·운

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의2)

-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2)
- 청문절차에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16조)
-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회적 약자 및 어르신·어린이를 위한 반려식물 보급 등에 관한 사업, 농부의 시장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함(안 제20조)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조례안의 개요

- 본 조례안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농업위원회의 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(안 제2조, 제13조의2, 제16조)

- 국회는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·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농업관리사를 도입하는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도시농업법')을 2017년 3월에 개정하였음(붙임자료 1 참고)
- 개정된 도시농업법 제2조 제1호는 농작물의 경작·재배로 한정되어 있는 도시농업의 정의에 수목 또는 화초의 재배, 곤충사육(양봉)을 추가하여 외연을 확대하고 있음.
- 이는 도시농업이 농작물의 경작·재배에 머물지 않고 생활원예, 양봉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도시 인근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농업활동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해되며 안 제2조 제1호는 개정된 도시농업법의 정의를 그대로 반영한 것임.

현행 조례	조례 개정안	비고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도시농업"이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, 여가,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도시농업"이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가.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.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.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(양봉을 포함한다)하는 행위</p>	<p>비고</p> <p>법률 개정 사항 반영</p>

- 또한 도시농업법은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 기술을 보급하고자 국가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2조 제7호의 정의와 제16조 제3호의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.

현행 조례	조례 개정안	비고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7. "도시농업관리사"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, 교육,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항</p>	<p>비고</p> <p>법률 개정 사항 반영</p>

	<u>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</u>	
제16조(청문) <u>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, 이때의 절차는 「행정절차법」을 따른다.</u>	제16조(청문) <u>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, 이때의 절차는 「행정절차법」을 따른다.</u> 1. <u>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</u> 2. <u>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</u> 3. <u>법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</u>	법률 개정 사항 반영

- 한편 도시농업법은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의 날의 취지에 맞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13조의2는 도시농업법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하거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시민에게 도시농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됨.

현행 조례	조례 개정안	비고
<u><신설></u>	<u>제13조의2(도시농업의 날) ①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.</u>	법률 개정 사항 반영

	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다.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현황(안 제5조부터 제6조의2)

- 서울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, 도시농업 관련 연구,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, 도시농업 중장기 비전 설정 등에 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농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(붙임자료 2 참고)
- 안 제5조 제2항과 제6조 제2항은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제6조 제6항은 위원회가 성별, 직능별로 균형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현행 조례	조례 개정안
<p><u>제5조(위원회의 설치)</u>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농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2.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,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</p> <p>3.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 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<u>제5조(위원회의 설치·기능 등)</u>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농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</p> <p>1.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2.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,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</p> <p>3.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 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

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, <u>부위원장 1명은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</u> 추천한 시의원 2.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.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<p>④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,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특별시의회에서</u> 추천한 시의원 2.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.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또한 안 제6조의2는 특정사항 등에 대하여 10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현행 조례	조례 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6조의2(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위원회는 전문적·효율적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>③ <u>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,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</p>

라.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(안 제20조)

- 「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0조 제1항은 도시농업 사업 중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는 최근 추진 중인 반려식물의 보급 사업, 농부의 시장 사업을 추가하는 것임.

현행 조례	조례 개정안
<p>제20조(도시농업의 육성 지원)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,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서울시 <u>인접</u> 시·군에 서울시민을 위한 주말농장(텃밭)조성 사업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8.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0조(도시농업의 육성 지원)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,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서울시 <u>인근</u> 시·군에 서울시민을 위한 주말농장(텃밭)조성 사업</p> <p>8. <u>사회적 약자 및 어르신·어린이를 위한 반려식물 보급 등에 관한 사업</u></p> <p>9. <u>농부의 시장에 관한 사업</u></p> <p>10.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- 이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시농업의 치유적 기능을 통하여 위안과 평안,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으며 도시농업의 판로 확대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마. 종합의견

- 도시농업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장점이 있음.
-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취미·여가 활동으로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도시농업의 날 지정은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농업의 외연 확대는 도시농업에 대한 더 많은 참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 판단됨.

도시농업법 관련 규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3.21.>

1. "도시농업"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

나.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

다.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(양봉을 포함한다)하는 행위

2. "도시지역"이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
3. "도시농업인"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4. "도시농업관리사"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, 교육,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
제7조(도시농업협의회)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
2.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

3.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

4.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

5.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,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6.12.2.>

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 <개정 2016.12.2.>

1.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2.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농촌진흥청,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각 1명

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의2(도시농업관리사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(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)을 취득하였을 것

2.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을 것

② 도시농업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누구든지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는 아니 되며,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.
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에서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⑥ 그 밖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신청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의3(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- 2.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
- 3.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
- 4.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

제20조(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3.21.>

- 1. 공영도시농업농장, 민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임대 정보 및 임차 신청
 - 2.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·농자재 등의 제공·교환·폐기·회수 등에 관한 정보
 - 3.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
 - 3의2.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
 - 4. 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
 - 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2(도시농업의 날) ① 국가는 국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2조(청문)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7.3.21.>

- 1.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
- 2.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
- 3.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




제23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

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
2.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도시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를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
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(3기) 위원 명단

연번	분야	성명(성별)	생년월일	현직 및 주요경력	학 력	
1	당연 직	 서동록 (남)	69.01.05	·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 ·(전)맥킨지 한국지점(서울) 파트너 ·(전)재경부 국제금융국 행정사무관	·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· Yale 대학원(경영학) MBA	
2	시 의원	 김영한 (여)	68.05.11	·시의원(기획경제위원회) ·운영위원회 위원 ·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	·연세대학교 세라믹공학과 younghank2@hanmail.net	
3	시민 단체	 안철환 (남)	62.09.13	·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 상임대표 ·온순환협동조합 대표이사	· 영훈고등학교 ojok1@hanmail.net	
4		 신동헌 (남)	52.05.11	·도시농업포럼 상임대표 ·남양주국제슬로푸드대회 조직위원회 위원	·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kbsspd@hanmail.net	
5		 백혜숙 (여)	66.11.10	·에코11 대표 ·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도시농업연구위원 ·서울 도시농업박람회 감독	· 서울대학교 농대 잠사학과 학사 · 경원대 사회적기업학과 석사 kbsaokr@hanmail.net	
6		 김경원 (여)	64.07.06	·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 전 회장 ·스쿨팜 강사 ·(전)수원농림고등학교 원예교사	·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 kweonkim0995@hanmail.net	
7		 고창록 (남)	50.01.17	·노원문드라곤협동조합 이사장 ·도시농업-사회적경제 포럼 대표	· 한국의국어대학교 · 성공회대 대학원 crkauh@hanmail.net	
8		 김진덕 (남)	69.10.25	·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대표 ·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·도시농업연구회 이사	·평생교육진흥원 문학사 cityfarmer3@gmail.com	
9		 옥진주 (여)	64.02.26	·한국사회원예연구소 소장 ·(전) 신구대 도시원예과 교수	·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floplia2002@hanmail.net	
10		 구은경 (여)	74.12.25	·여성이 만드는 일과미래 상임이사 ·서울도시농업시민협의회 공동대표 ·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교육위원	· 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 gugu7074@naver.com	
11		연구 기관	 이기택 (남)	65.12.08	·경기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팀장 ·경기도 시흥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 ·경기도 화성시 도시농업위원회 위원	·건국대학교 농업교육학과 lkt2020@gg.go.kr
12			 박동금 (남)	57.10.15	·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장 ·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준비 위원	·안동대학교 농학박사 dkpark@korea.kr

13	학계		이종석 (남)	46.08.26	·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 ·(전)도시농업연구회장	· 고려대학교 대학원(농학박사) swulan@swu.ac.kr
14			이용범 (남)	51.12.03	·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·월드비전 북한농업연구소 소장 ·국제원예연구원 원장	·서울대 대학원(농학박사) hydropo@uos.ac.kr
15	생산 현장		조강희 (남)	56.04.23	·허브다섯메 대표 ·허브협회 회장	·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cho423@hanmail.net